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1 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협정이란 이 협정을 말한다.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 제 1.4 조제 1 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총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수입세,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 5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세계무역기구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법 및 규정이란 관세, 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금지, 제한 및 각 당사국 관세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환적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

통관절차란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나 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 년도 GATT 란 주해 및 보충규정을 포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 의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시 발효 중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적 주석에 정의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표기방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 12.1 조(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시로 개정되는 「인도네시아법 제 12/2006 호」
또는 그 승계 법률에 정의된 인도네시아의 국민

원산지 상품이란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토, 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및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에 정의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 1.2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 24 조 및 GATS 제 5 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3 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나.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서비스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 기회의 실질적 증대를 달성하는 것

라. 양 당사국 경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마. 이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틀을 수립하여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의 무역 관계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

제 1.4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